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55

발의연월일: 2020. 8. 6.

발 의 자: 박수영·한기호·서범수

유경준・지성호・김미애

전주혜 • 유상범 • 박성민

하영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은 1년에 한 차례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,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처럼 보궐선거 등이 1년에 한 차례만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권한 대행체제가 이루어지는데,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 출신 권한대행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받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함.

또한,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백기와 권한대행체제는 대의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
이에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한정하여 4월 첫 번째 수요일 이외에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한 차례 더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,

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등과의 동시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2항제1호, 제20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·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·재선 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,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. 이 경우 각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.
 - 가.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의 보 보궐선거·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. 다만,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.
 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·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.
 - 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·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.

제20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 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며,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.
- 1.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보궐선거등, 제35조제2항제1 호가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 중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 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
- 2. 제3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
- 3. 제3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궐선거등 중 3월 1일부터 4월 30 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

제203조제4항 중 "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(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) 전 30일 후부터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"을 "다음 각 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제35조제2항제1호 전단"을 "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(가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- 1.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보궐선거등 중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
- 2. 제3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5조(보궐선거 등의 선거일) ① 제35조(보궐선거 등의 선거일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보궐선거·재선거·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·폐지·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1.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의 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 궐선거·재선거 및 지방의회 거·재선거,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요일. 이 경우 선거일에 관 의 보궐선거·재선거는 매년 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 2회 실시하되, 다음 각 목에 하고, 선거일 전 30일 후에 따라 실시한다. 이 경우 각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 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일에 실시한다. 가.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의 보 보궐선거·재선거 및 지 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 시한다. 다만, 3월 1일 이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 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

2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203조(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 제203조(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 일) ① • ② (생 략)

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 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 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 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.

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 다.

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·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 시한다.

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·재선거 중 3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 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 다.

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일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 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 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 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 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며,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

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 ④ ------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 에 따른 선거일(제203조제3항 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 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 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다음 각 호 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 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.
- 1.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에 따른 보궐선거등, 제35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 중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 정된 보궐선거등
- 2. 제3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 른 보궐선거등
- 3. 제3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 른 보궐선거등 중 3월 1일부 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
- ----다음 각 호에 따른 보궐선 거<u>등은</u> -----

다)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 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 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.

- 1.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보궐선거등 중 1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보궐선거등
- 2. 제3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 중 전년도 9월
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